[공모펀드 변경안내]

■ **펀드명 :** 유진G-BEST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변경시행일 :** 2016년 10월 17일(월)

■ **변경 대상 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 **주요 변경내용 :**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투자대상자산 확대(환매조건부매수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유보가능 이익 조항 변경

3)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표지]작성기준일	2015년 11월 24일	2016년 10월 10일
[표지]효력발생일	2016년 7월 30일	2016년 10월 17일
요약정보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中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中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수익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신 설>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유보가능 이익 조항 변경 3) 투자대상자산 - 환매조건부매수 신설 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제 5)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	<신 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

자대상, "가. 투자대상"		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년 10월 17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①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

		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실적 및 자산구성현황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

		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 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법 제19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제4 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집합투자업자는 '④'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 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① (생 략) ② (3), (4)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

		하며, 이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유진자산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fund.eugenefn.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신 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신 설>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신 설>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효력발생일'	2016년 7월 30일	2016년 10월 17일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中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中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수익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환매조건부매수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생 략) <신 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단서 조항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생 략) ②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 ② (생 략) ③제1항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이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유진자산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fund.eugenefn.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 (생 략) ⑨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다)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4조(관할법원)	① (생 략)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